

또 다른 삶의 준비

연명의료 결정제도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
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
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
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
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
2018. 2. 4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시행

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
보건복지부 지정
사전연명의료의향서
등록기관입니다.

상담 및 작성 문의

063) 274-3927, 272-4430

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

사단
법인

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